

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 내용

이유수(에너지경제연구원)

<에너지 시장 및 운영 시스템과 규제>

- 에너지 시장의 운영과 규제제도의 관계
 - 전통적 에너지 규제 시스템은 가격 및 진입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보호, 한편으로 사업자의 총괄원가 보상, 적절한 수익보장
 - 에너지 시장의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도입,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시스템으로 변화, 불공정경쟁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, 경쟁을 통한 시장의 가격기능 신뢰, 사업인허가 및 다수 사업자의 분쟁조정 등
- 우리나라 전통적 독점적 에너지 시장 규제체제 지속
 - 2001년 4월 전력시장 구조개편 후에도 본질적 전통적 독점시장체제 유지
 - 에너지 시장은 규제일변도로 경쟁기반 정착 미흡, 정부 및 공기업이 주도하는 규제위주의 에너지 시장운영은 독립적 규제기관의 필요성 감소

<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는 시장 및 운영시스템의 변화>

-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 시장 및 운영시스템의 변화
 - 탄소중립의 이행, 대규모 전통발전설비에서 친환경 분산에너지자원 증가,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확대, 기술발전 및 신규사업 모델 활성화, 다수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이해관계 대립, 연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규제 한계
 - 에너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, 일관된 전통적 규제시스템으로 운영체제 유지, 특히, 요금에서 과도한 규제,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왜곡 심화
 - 시장제도 및 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사업자(공기업)의 책임으로 전가, 소비자에 대한 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리스크 분담문제를 고려하지 않음.
- 에너지 환경변화에 걸맞는 에너지 시장제도 및 운영시스템으로 변화
 - 연료비 상승에 대한 요금상승 문제는 시장구조와는 관계없이 발생, 다만 경쟁을 통한 가격기능의 정상화와 적절한 규제로 적정 자원배분 달성
 - 현 시장구조와 운영체제는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음. 과도한 요금규제는 과소비, 한전의 심각한 적자, 투자재원 마련 부족, 공급능력 저하에 직면

- 따라서 전력 판매시장 개방으로 다수 사업자 경쟁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 압력이 전달되도록 시장구조 변화, 도매시장의 가격입찰 및 양방향 입찰, 계약시장 확대 등은 시장의 가격안정화에 기여
- 궁극적으로 도매 및 소매시장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장구조 정착 노력

<에너지 규제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>

- 에너지 시장의 경쟁도입 기반 하에 경쟁과 규제의 적절한 조화
 -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요금규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독립적 규제기관의 필요성 제기, 기능강화를 위한 시장의 경쟁도입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
 - 특히, 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판매시장 개방과 다양한 사업기반 구축 병행
 - 전력 판매시장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와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등이 이루어질 필요
- 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관의 형태
 - 에너지 독립적 규제기관에 대한 국외 사례 및 국내 타 분야 규제기관 사례 준용
 - 전반적인 에너지 규제관련 사항 결정권한 부여 및 예산의 독립성 확보, 하부위원회를 통한 전력계통 감독, 분쟁조정 등 사항 처리
- 에너지 규제기관 설립의 고려 사항
 -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 문제
 - 전력, 가스, 재생에너지 등 단일 에너지원 또는 종합적 규제 기관